

「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2022년 10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족에게 시세를 감면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.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 제4항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시세를 감면하고자 함.

3. 감면대상자

-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(다만, 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. 이하 “이태원 감면대상자” 라 한다)

4. 세목별 감면내용

- 주민세
 -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 개인분, 사업소분(「지방세법」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)을 면제한다.

○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

-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2년 2기분 및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.

○ 재산세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, 이하 같다)

-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.

5. 감면방법 : 직권 또는 신청

6. 기타사항

-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고 이미 납부한 구미시 시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되, 피해와 사고를 허위로 신고하여 감면받은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.
-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이태원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.

7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 제4항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(지방세 감면규모 등)

- 「지방세법」 제75조(납세의무자)
- 「지방세법」 제78조(주민세 개인분 세율)
- 「지방세법」 제81조(주민세 사업소분 세율) 제1항1호가목
- 「지방세법」 제127조(자동차세 소유분 과세표준과 세율)
- 「지방세법」 제111조(재산세 세율)
- 「지방세법」 제112조(재산세 도시지역분)

○ 예산관련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합 의 :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○ 기 타 :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 통보

(도 세정담당관-15426, 2022. 11. 4.)

8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에 따라 재난·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함에 따라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 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감면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